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제출 보고서 포함 사항을 법률에 명시〉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 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
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이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 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상향하여 규정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점검 결과가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u>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u>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 -----.
<신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신설>	2.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 점검 결과
<신설>	3. 제9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점검 결과
<신설>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에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¹⁾ 현행법 시행령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⑤ (생략)

【2024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 ▶ 정보공개제도 개요 : 의의, 추진경과, 운영성과, 발전방향 등
- ▶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 운영현황 : 2023.1.1.~2023.12.31.
 - 종합평가 : 2022.9.1.~2022.8.31.
- ▶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구분
- ▶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 ▶ 정보공개 세부운영 현황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 원문공개 운영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국회 제출 사항을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제2호 및 제3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및 현행 법령의 국회 제출사항 비교】 4)

개정안	현행법 시행령	비고
-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2호- 제9조제3항에 따른 <u>비공개 대상 정보</u> 범위의 적정성 점검 결과	(현행 규정 없음)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 및
-3호- 제9조제4항에 따른 <u>비공개 대상 정보의</u>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현행 규정 없음)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추가
-4호-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5호-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
해 보임.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② (생략)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⑤ (생략)

첫째, 시행령 위임 사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을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사항을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 및 세부 기준 점검 결과(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의 비공개 사유에 부합하도록 2006년도에 공공기관에

-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하도록 하고,⁶⁾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을 정기적(3년마다)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⁷⁾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안은 이 사항들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보고를 통해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26조제1항제2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을, 제3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사유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법 제26조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안 제26조제1항제2호와 현행법 제9조제4항의 중복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제1항제3호로 통합·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2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공개·비공개 여부를 모두 점검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제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우려가 있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0